

이슈페이퍼

23-21-3

ISSUE PAPER

중소기업기술 탈취 근절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개정 상생협력법 등을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이슈페이퍼

23-21-3

ISSUE PAPER

중소기업기술 탈취 근절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개정 상생협력법 등을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목차

CONTENTS

PART 1.

서론	06
1 연구배경	06
2 연구내용 및 방법	07

PART 2.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내용 검토	09
1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09
2 개정 하도급법 등 불공정 규제 법률 검토	14
3 지식재산 보호 법률 검토	17
4 기술보호 법률 검토	20

PART 3.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 사례 분석	23
1 중소기업기술 침해 현황	23
2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 사례 검토	24
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	29

PART 4.

기술보호제도 도입 효과 32

- 1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제도 도입의 효과 검토 32
- 2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 제도의 효과 검토 36
- 3 기술보호제도의 비교 검토 38

PART 5.

시사점 및 입법적 제언 44

- 1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의 입법 방향 및 효과 44
- 2 법적 요건 · 절차 및 체계 정비 45
- 3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 46
- 4 기술보호 법률 입법 시 고려 사항 47

참고문헌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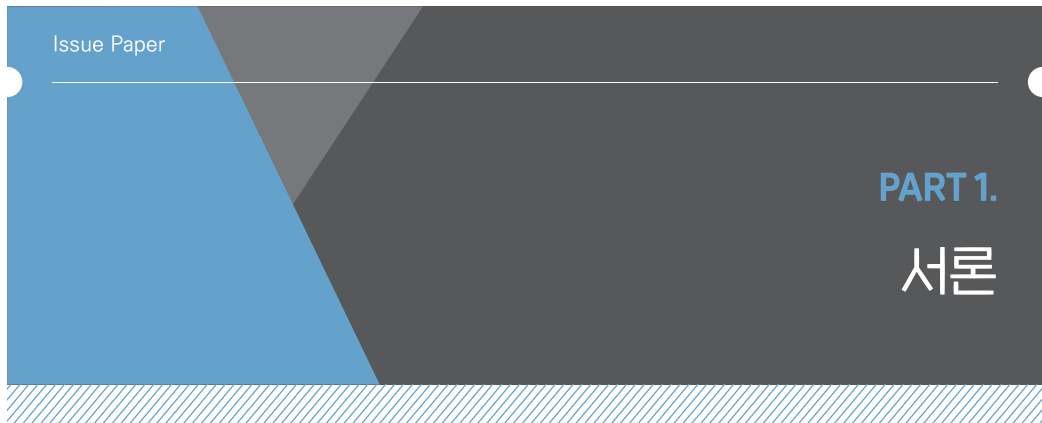
요약문

SUMMARY

- 최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적 성과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2021. 8.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상생협력법”이라 함)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은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을 신설함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분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료 제공사실 등에 대한 사후 입증을 용이하게 함. 이는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 개정 상생협력법의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외에도,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유용행위를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여함. 그러나 위탁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 재판상 방어권 제한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의 효과도 있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증인신문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도 담고 있음. 개별법에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려면 피해 중소기업 및 법원의 부담 경감, 소송기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 또는 권리 침해를 형량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거래나 협업을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등도 고려해야 함
- 개정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 특허법 등에 맞추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제공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당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로 하는 법안도 있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11년 하도급법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항소심 1건으로, 손해의 실질적 보전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

-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개정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해 왔음. 최근 “기술적 아이디어”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있는지, 벌칙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위반행위와 손해를 밝히는 데에 중요하므로 현장조사 등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필요함
- 개정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이 있고 각 법률에서 보호 대상 및 그 요건부터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명령·시정권고, 공표 또는 과징금 등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복잡화와 피해 중소기업의 소관 부처별 대응의 어려움이 가중됨
- 침해된 기술이 어느 법률의 보호 대상인지 모호하거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또는 조문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음.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조치 등을 위해 부처 간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중요한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등 법적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 및 행정적 조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이들의 요건이나 법률·조문 간 관계 또는 우선순위 등을 보다 정치하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규정할 필요 있음



1 연구 배경

▣ 중소기업 법적 지위의 전환

- 종전에는 법적 지원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던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최근 기술혁신과 풍부한 아이디어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3’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기업 9개사 중 벤처·스타트업은 5개사로 LG전자·삼성전자 등 대기업 수(4)를 초과함.¹ 향후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적 기술이나 상상 없이 대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임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 대기업-중소기업 간 투자,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기술 탈취 피해금액은 2천827억원인데,²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그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1 중소기업뉴스(2023.01.23), “CES 최고혁신상 20개 중 5개는 韓 스타트업이 휩쓸었다”.

2 산업일보(2023.06.01.),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여전, 피해만 2천827억원”.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확인

-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相生協力)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21. 8.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 이하 “개정 상생협력법”이라 함)은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유용행위를 방지하고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함

□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비교 검토

- 개정 상생협력법에 신설된 중소기업기술 유용방지제도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 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함께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의 개정 사항과 두 법 간의 관계 등도 확인함.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있는바, 기술의 부당이용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여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내용과 영업비밀 및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제도들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정 상생협력법을 비롯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들이 입법 당시 의도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법률 간의 중복·상충 등의 문제나 미흡하여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적 상생 및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입법영향분석 기준 즉,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상생협력법 등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 “영업비밀”, “기술적 아이디어” 등은 지식재산³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지의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3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례 분석

- 현재까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개정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침해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 부처의 조사와 함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음. 구체적 분쟁 사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분쟁 유형, 각 주체의 대응 행태, 부처의 조치 내용 및 법원 판결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분쟁 과정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해 봄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Issue Paper

PART 2.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의 내용 검토

1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부과(법 제21조의2 신설)

- 2021. 8. 개정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유용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가장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⁴ 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임. 개정 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개정 상생협력법은 개정 전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한 후 서면으로 적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4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에서는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제4호)로 규정하고,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로,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정의함.

상생협력법 (법률 제18431호, '21.8.17. 개정 전)	상생협력법 (법률 제18431호, '21.8.17. 개정)
<p>〈신 설〉</p> <p>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u>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u>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u>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⁵ <p>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개정 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기술자료⁶ 중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하여 수탁기업이 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상호 간에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개정 전 상생협력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탁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주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신설된 제21조의2제1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적용되었던 중소기업부장관의 주기적 조사 및 개선요구, 공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생협력법(법률 제18431호, '21.8.17. 개정)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⁶ 상생협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제1호) 또는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제2호)로 규정하고 있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제43조(과태료)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기술자료 부당 사용·제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 개정 상생협력법 제25조제2항은 개정 전 같은 항 후단에서 금지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에 대한 위탁기업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함

상생협력법(법률 제18431호, '21.8.17. 개정)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체적으로 개정 상생협력법 제25조제2항에는 종전과 같이 중소기업부장관의 주기적 조사 및 개선요구, 공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이 적용됨. 상생협력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25조제2항의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또는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되,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제12조의3 등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생협력법 제25조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⁷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완화(법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 개정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부정 사용·제공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 및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통상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저야 함에도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와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함⁸

상생협력법(법률 제18431호, '21.8.17. 개정)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7 상생협력법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생협력법(의안번호 210559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개정 하도급법 등 불공정 규제 법률 검토

▣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 개정 상생협력법과 함께 개정된 하도급법(법률 제18434호로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⁹⁾를 위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요건을 완화(비밀로 유지된→비밀로

9 하도급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로 정의함.

관리되는)¹⁰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서면으로 주도록 하는 규정에 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하도급법(법률 제18434호, '21.8.17. 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은 2011년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2018년 개정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부당하게 사용·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했음. 개정 하도급법은 개정 상생협력법과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원사업자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손해 및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법의 입법례에 따라 신설된 것임¹¹

하도급법(법률 제18434호, '21.8.17. 개정)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하도급법 제2조제15항에서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제1호)나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제2호)로 규정함.

11 하도급법(안건번호 2103850)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부당한 사용·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제22조)¹², 시정명령(제25조),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시정권고(제25조의5)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¹³할 수 있고(제24조의5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원사업자 등은 불공정 거래의 자발적 해결을 위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24조의9)을 받아 이행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아울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30조제1항)에 처하고,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¹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28조)

▣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기술의 부당이용”을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금지(제45조제1항제8호)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제45조제1항 제6호)함
-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제49조), 과징금 부과(제50조), 조사(제80조 등) 및 고발(제129조)¹⁵ 등을 할 수 있고,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제76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제109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제89조)
-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등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매출액의 6/100을 이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12 하도급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대상인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함.

1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해서는 안 되며(제24조의5)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제24조의6).

14 공정거래법 제45조①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15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125조제4호), 해당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제129조).

3 지식재산 보호 법률 검토

□ 지식재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헌법은 일반적인 재산권에 관한 규정(제23조)과는 별개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제22조제2항)함. 이에 따라 지적·정신적 활동의 성과로서 창출·발견되는 무형적 재산에 대한 권리¹⁶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시간·노력을 기울여 연구·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함
-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¹⁷,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식재산을 효과적·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이념을 준수(제2조)하도록 규정함.¹⁸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해야 함(제5조제1항)
- 또한 정부로 하여금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반 마련(제19조),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제21조 및 제22조), 지식재산의 객관적 가치 평가 체계 확립(제27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 방지 및 상호 협력 촉진(제28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의되어 있고,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WIPO) 제2조(vii)에서는 “지적소유권”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7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기술 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각각 “발명”과 “고안”을 보호·장려하려는 법으로서 출원·심사청구·심사·설정등록 등의 주요 절차¹⁹⁾는 동일함
- 특허법의 발명은 고도(高度)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보호대상 및 권리의 존속기간 등은 실용신안과 차이가 있음.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 창설 당시 우리나라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외국인의 특허 독점을 우려하여 도입(1909년)했다고 하나,²⁰⁾ 최근에는 상상이나 아이디어가 기술발전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

특허와 실용신안과의 차이

구분	특허	실용신안
정의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u>고도(高度)한 것</u>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보호대상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권리존속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인간의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권은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바, 특허법 제6장은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등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19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0 고영남 외, 『특허와 지식재산권법』, 2019, 263면; 윤선희, 『지식재산권법』, 2022, 196면 참조.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25조),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몰수 등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231조)

- 실용신안법도 침해 금지·예방 청구권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제30조)하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제45조) 및 몰수(제51조)에 대해서도 특허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는 특허권과 같이 공개함으로써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제도는 모두 기술발전의 성과 보호를 위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될 때의 이익, 누설 위험 정도, 특허 취득 가능성 및 시간·비용, 특허권 취득에 따른 이익,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비교 선택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①비공지,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 ③비밀 관리, ④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하고(제2조제2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금지·예방 청구권(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제11조) 등을 인정하면서 고의적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14조의2), 부정한 이익을 얻는 등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제18조)
-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개정 시 중소기업,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제2조제1호차목)²¹하여 명시적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²²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의 조사·시정권고(제7조·제8조)와 함께 금지청구권(제4조), 징벌적 손해배상(제14조의2), 신용의 회복(제6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벌칙 대상에서 제외함.²³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특허권

21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558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7. 18.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고.

22 2018년 개정 전: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탈취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 있음.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디어는 발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상품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아이디어 탈취행위 해당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의안번호 201036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또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의안번호 200955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23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5580호, '18.4.17.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술보호 법률 검토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2014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 역량이 취약한 점²⁴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보호 및 지원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역량강화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예비창업자도 포함)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요건(대상)이 되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²⁵을 구분하여 규정함(제2조)

24 제정 당시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2013. 3)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규모는 15.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음(의안번호 제1907619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2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① 기술침해 대응, ② 사전예방과 역량강화 기반조성 및 지원과 ③ 신속한 기술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권고 및 공표²⁶할 수 있고(제8조의2 및 제8조의3),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제12조), 보안기술 개발 및 보급·확산 사업(제15조) 등을 추진하며,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해 그 소속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23조)

■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민간 기업비밀누설에만 처벌이 한정되어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곤란²⁷함에 따라 대상기관을 기업 외에도 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으로 하여(제2조제4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²⁸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6 2018. 5.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안번호 제2010148호) 국회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와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권고 및 공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조정·중재의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형사상 소송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7 산업기술보호법(법률 제8062호, 2006.10.27. 제정, 2007.4.28. 시행) 제정이유서 등 참고.

2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부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 장에게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의 계약 체결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제10조), 누구든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제14조)²⁹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제14조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제22조의2) 등을 규정하며,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제36조)

▣ 형법 또는 민법의 적용

- 중소기업기술 탈취에 관해서는 그 행위에 따라 배임죄, 절도죄 등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도 가능함

29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식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Issue Paper

PART 3.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 사례 분석

1 중소기업기술 침해 현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정 전후 상황 비교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등의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해 왔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상황임. 2013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에 이르는 등 관련 사례들의 피해액이 상당했음³⁰

2013년 당시 기술탈취분쟁 주요 사례³¹

- 중소기업 제조 납품업체인 'M사'와 대형(식품) 유통업체인 'E사' 및 'S사' 간의 기술탈취 분쟁 사례 ('13.3)

* 'M사'는 OEM으로 'E사'에 납품(13년간) → 'E사'는 'M사'와 거래단절하고, 자회사인 'S사'('M사' 떡갈비 제조법을 탈취)로 거래선 변경 → 국정감사 심문('13.10, 'S사' J모 부회장) → 공정위 조사

3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조사('13.3).

3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안번호 190761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 비상호출시스템 제조업체인 'S사'와 대기업 'L사' 간의 기술탈취 사례('03)

* 'S사'가 개발한 비상호출시스템을 도용한 'L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기각('06~'09) → 'L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기술검토 의견 확인('13.3, ETRI) → 법원에 대한 재심청구('13.5)

※ 장기간(10년 간) 소송 과정에서 사옥매각, 인력이직 등의 막대한 피해발생(약 80억원)

• 이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에 중소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로 확인된 중소기업기술 침해 피해사례만 보아도 2017-2021년 사이 280건으로, 그 피해금액은 2천827억원임.³²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탈취의 형태·방법에 유사한 측면이 많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구체적 분쟁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음. 이하에서는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관한 주요 사례를 유형별 구분하여 살펴보고, 가급적 세부적인 사실관계나 주장들은 배제하고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관련 법 적용에 따른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함

2 중소기업기술 관련 분쟁 사례 검토

▣ 하도급관계에서의 중소기업기술 유용 사례

○ 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업체인 'S사'와 대기업 'H사' 간의 기술 분쟁 사례

* 'S사'는 'H사'와 태양광 설비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11~'15년) → 이 과정에서 'S사'는 'H사'가 자신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했다고 주장, 공정위 신고('16.7)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18) → 공정위, 'H사'가 'S사'의 기술유용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8천2백만원) 부과 검찰 고발('19.10) → 검찰의 불기소 처분('20.8)과 항고 및 재정 신청 기각 → 'S사', 손해배상 1심 패소('20.8)³³ 및 항소 → 'S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21.12)

※ 항소심에서 'H사'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 인정,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최초 적용하여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

32 한겨레(2022.10.23.), “대기업의 기술탈취...이거기도 어렵고 이거기도 이긴 게 아니더라”.

33 중소기업뉴스(2022.01.03.),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와 기술유용 손해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신소재경제(2020.09.21.),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100억대 손해 1심 패소”.

-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것을 금지(제12조의3)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제22조)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제25조)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및 고발(제32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정조치 및 소송) 이 사례에서 'S사'는 하도급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 'H사'의 기술자료 유용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H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 절차도 진행함. 또한 'S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적으로 제기하는 등 기술유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9.10)는 'S사'의 신고('16.7) 후 3년이 경과한 후 행해졌고³⁴, 해당 신고 후 약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소('18)는 3년이 지난 후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21.12)이 남. 앞서 살펴본 '비상호출시스템' 제조업체인 'S사'와 대기업 'L사' 간의 기술탈취 사례('03)에서 오랜 분쟁 기간(10년)으로 인해 당시 8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개정 하도급법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행정조치 및 소송 장기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징벌적 손해배상) 위 항소심 판결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 첫 판결로 알려져 있음. 항소심 재판부는 'H사'가 계약기간 중 경쟁자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되어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³⁵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필요 있음. 손해배상액이

34 H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명령취소소송이 인용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

35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와 기술유용 손해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중소기업뉴스, 2022.1.3,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100억대 손해 1심 패소', 신소재경제, 2020.9.21. 등.

기술유용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방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

- (기술자료 인정 기준) 1심에서 'S사'가 'H사'에 전달한 승인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은 매뉴얼 첨부 도면에 대해서는 'H사'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함. 하도급법 제2조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³⁶에서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정보를 예시 등을 통해 정의하고 있음. 기술자료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부처의 해석례나 판례 등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정해지거나 조정될 것이며, 필요 시 입법을 통해서도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각각 보호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 또는 기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충되거나 달리 정해지지 않도록 점검 · 조정해야 함
- (부처별 절차 · 조치 진행)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유용한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나 벌칙이 가해질 수 있음. 이와 같이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여러 법률에서 규제함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등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침해라는 하나의 상황에 대하여 여러 법률에서 유사한 행정처분 등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법체계가 복잡해져 피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절차나 조치 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 부처인데,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필요한 조사나 처분 등이 진행됨. 따라서 피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조치를 법률의 소관 부처별로 요청 ·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소관 부처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절차나 조치를 진행되면서 각 부처의 조치들이 중복 · 상충되거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의 비효율 또는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임

36 하도급법(법률 제15016호, '17. 10. 31.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운영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투자 및 협업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례

○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와 대기업 'L사' 간의 기술탈취 논란 사례

*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 분배기(dispenser) 생산업체 'A사'는 'L사'와 투자 및 협업 논의('21.9~10.)했으나 결렬 → 'A사'는 전시회에서 'L사'의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 분배기를 확인하고 'L사'가 자신의 사업 정보 편취했다고 주장 → 국회의원 중재로 양자간 협상 시도했으나 결렬('23.3) → 공정위 및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위원회 진행

※ 'A사'와 'L사' 주장

'A사'	'L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사'가 'A사'의 사업 노하우, 아이디어, 전략 등 사업정보 편취 - 'A사'와 'L사' 제품은 밀폐 용기를 디스펜서(dispenser)와 결합하는 구조, 용기 및 구조 원리, 영양제 토출방식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에 요청한 기술자료는 투자 및 협업 논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정보에 불과 - 영양제 분배기(dispenser)는 해외에서 보편적인 아이디어로, 'A사' 제품은 성분의 미세조정 기능 등이 특징인데, 'L사' 제품은 해외제품 수준의 기능만 제공하므로 'A사' 제품의 고유성 침해하지 않음

○ 뷰티테크 스타트업 'P사'와 대기업 'G사' 간의 기술탈취 논란 사례

* 'G사'가 타투 프린터³⁷ 생산 및 수출업체인 'P사'에 협업 및 공동개발 제안('19.1) → 'G사'가 'P사'에 제품 관련 기술 문의 및 요청(유선) → 'P사'가 요청하여 양자간 제품 공급 및 협업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19.6) → 이후 'G사'는 'P사'에 연락하지 않고 'P사' 신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구매('20.1) → 'G사'가 타투 프린터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20.9) → 'P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탈취 피해구제 신청 → 'G사'는 'P사'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 (투자 및 협업 제안 · 논의)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품 관련 투자 및 협업 논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고 후에 대기업이 해당 제품을 자체 생산한 경우임. 이 경우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³⁸ 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 · 위탁거래”에서의 기술유행행위로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제재 또는 벌칙 규정 등을 적용받기가 곤란함
-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37 블루투스 연결된 스마트폰 앱에서 타투 도안이나 사진 올리면 피부나 옷에 타투를 그려주는 휴대용 프린터.

38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사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에서의 기술유행행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도입(1991. 12. 31, 법률 제4478호)³⁹함.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인 ①비공지,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 ③비밀 관리, ④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호차목에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두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닌 “아이디어”일 경우에도, 그리고 하도급계약이나 수탁·위탁 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및 협업 논의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아이디어 정의 부재) “아이디어”라는 용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저작권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⁴⁰ 등 몇몇 법률에서 쓰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를 기술한 법률 규정은 없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이디어”를 “어떤 일에 대한 구상”으로 정의하고 연관 단어로 “고안”, “생각”, “착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기술적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어야 함
- (보편성 기준) 첫 번째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와 대기업 ‘L사’ 간의 기술탈취 논란 사례’에서 기술탈취라는 ‘A사’의 주장에 대해 ‘L사’는 해당 기술이 보편적인 아이디어라고 반박함.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의 ‘보편성 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기준임. 그러나 무형의 아이디어 특성상 제공받은 자가 이미 해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은 가려내기 어려움. 대기업의 경우 소위 신박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규모 자금 및 광고 등을 활용하여 제품생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기술적 아이디어의 탈취 유인이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제2조제1호차목에 따라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특허청장 등은 이를 조사·검사(제7조)하게 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반행위 내용

39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유(법률 제4478호, 1991.12.31. 개정): 최근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營業秘密)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영업비밀의 도용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하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2016, 15면 참조.

40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각 목을 “환경산업”으로 규정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제8조)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벌칙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피해 기업이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양측의 대응 행태) 두 번째 '뷰티테크 스타트업 'P사'와 대기업 'G사' 간의 기술탈취 논란 사례'에서는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양측의 대응 행태를 확인해 볼 수 있음. 대기업인 'G사'의 경우 기업이미지나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한 반면, 중소기업 'P사'의 경우에는 대기업과의 분쟁 결과를 낙관하지 못해 행정조사 요청이나 소 제기를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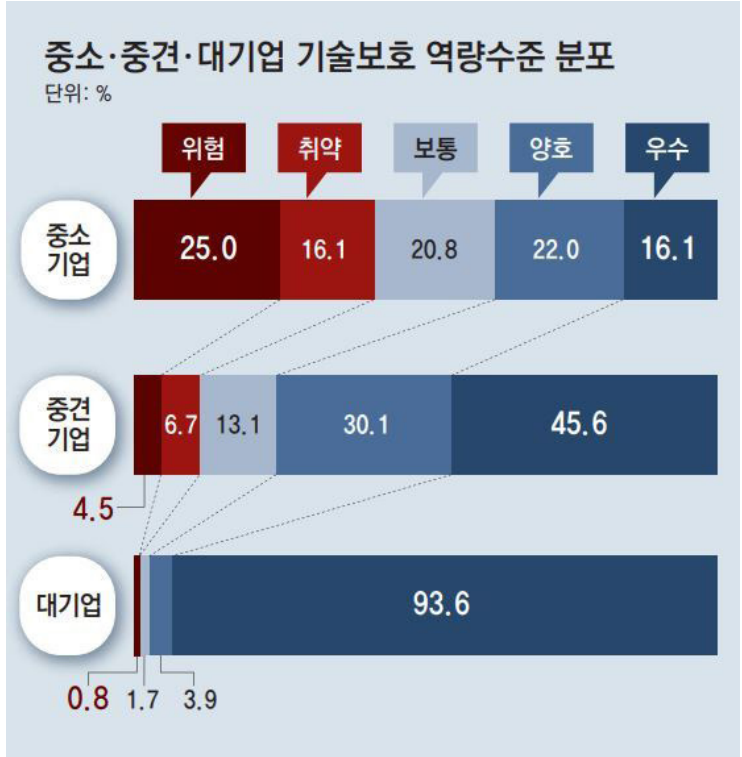
3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보안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87점) 대비 56.7%에 그침⁴¹

4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전국 3400개 기업 조사).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최종 접속일: 2023.06.05.) 참조.

그림 1 | 중소·중견·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분포



* 자료: 동아일보(2023)⁴²

▣ 기술보호정책에 대한 수요

- 국내 중소기업 3200곳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 지원(62.7%)이 필요하다는 응답⁴³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술거래 표준계약서 보급(35.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4%), 신속한 수사 및 처벌(33.6%), 기술침해 행정조사권 강화(30%) 등의 순으로 요청됨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적 조치, 행정적·민사적·형사적 구제가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청의 조사 내용 등을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적·사법적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42 동아일보(2023.01.26.), “스타트업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의 57%”.

43 동아일보(2023.01.26.), “스타트업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의 57%”.

그림 2 | 스타트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수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제도 도입의 효과 검토

▣ 비밀유지계약 신설의 효과 검토

- 개정 상생협력법과 개정 하도급법은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임. 이들은 각각 중소기업기술 부정 사용·제공 행위의 사전 방지와 효과적인 사후 구제가 그 목적이라 할 것임
- 먼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두 법은 수탁·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으로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범위·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한 것임. 이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알도록 하여 기술탈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사후에 기술자료 제공사실 입증 등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21. 8. 개정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협의하여 그 내용을 중소기업에게 서면으로 주도록 한 것보다 진일보(進一步)한 것임
- 수탁·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는 앞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기술탈취분쟁은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조치로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효과 검토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일방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데, 제출 대상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상생협력법) 또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하도급법)임.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이나 일정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위탁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부분의 기술탈취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⁴⁴을 고려한 것으로, 당사자의 재판상 증거의 제출·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이 경감됨.⁴⁵ 특히, 소송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자료제출명령제도는 법원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나, 위탁기업이나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 사실상 강제되는 등 재판상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이며, 제출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하고 부당한 사용 등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한편, 개정 상생협력법은 '21. 7. 제385회 국회(임시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서 '20. 11.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2105594)을 포함한 6개 법률안이 반영된 것임. 당시 대안 폐기된 일부 법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절차로서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⁴⁶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⁷도 이 제도를 일부 담고 있음.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본안 소송 전 별도로 마련된 증거개시절차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공유하는 제도로, 소위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여 증거의 편재를 해결하고 본안 전에 당사자의 증인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상호 쟁점과 소송에서의 승패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비밀유출의 우려 외에도 디스커버리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및 많은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어 자금규모가 크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⁴⁸ 이 제도를 모든

44 하도급법(의안번호 2103850) 정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45 상생협력법(의안번호 210559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6 상생협력법(의안번호 210349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4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8, 이주환의원 등 15인 발의) 등.

48 김윤정,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59~70면.

민사소송에 적합한 미국 법체계와 우리 법체계는 다름. 증거수집제도의 일환으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그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⁴⁹

- 제26조(a)는 최초공개(initial disclosure)와 변론기일 전 공개(pre-trial disclosure)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소송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상대방과 공유할 의무를 가지며, 만일 소송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해당 증거를 앞으로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제26조(b)는 증거개시 제도의 범위 및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당사자는 변호사 특권에 의하거나 법원이 동의한 보호가 있는 외에는 모든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해당 자료의 제공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증거개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7조(c)에 따르면, 위에서 규정한 사안들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이를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37조(d)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신이 주재하는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증인신문서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나 상대방의 검사요청(request for inspection)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개정 상생협력법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제2항 및 제126조의2를 참고하여 손해액 인정 기준(제40조의3)과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40조의4)까지 신설함. 손해액 인정 기준⁵⁰은 위탁기업의 유용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및 법원의 산정 부담을 완화함.

49 김윤정, 앞의 보고서(각주 48), 2017, 59~70면.

50 상생협력법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제시 의무는 위탁기업에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민사소송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고 소송기간 단축 효과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임에도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자신의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위탁기업의 부담 및 방어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결국 양 당사자 간 입증책임 등의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 시에는 공익상 필요 및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위탁기업의 부담 가중 정도, 비례원칙 등도 살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거러나 협업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효과 검토

- 개정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 등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의 범위로 하는 법안⁵¹도 있었으나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 3배의 범위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보임
- 하도급법의 경우 2011년도에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항소심 1건에 불과하고 손해액의 2배에서 인정⁵²되었는데, 피해기업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이 중간인 2배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법원이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상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51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93) 참조.

52 중소기업뉴스(2022.01.03.),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와 기술유용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신소재경제(2020.09.21.), “에스제이 이노테크, 한화 100억대 손배 1심 패소”.

2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 제도의 효과 검토

■ 기술적 사상(思想)⁵³ 또는 아이디어⁵⁴의 법적 지위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과 ‘고안’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차이는 ‘고도(高度)성’에 있음. 1909년 실용신안제도의 도입은 당시 낮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기술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적 사상 또는 아이디어는 기술혁신이나 기술발전의 발단(beginning, root, seed), 원천(source) 또는 단서(clue)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위 신박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공개하고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고, 영업비밀로 보호받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적 아이디어도 2018년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바,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그 입법효과를 되짚어볼 필요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 효과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인한 침해행위를 규제함.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들어간 기술적 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공정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영업비밀”⁵⁵과 “영업비밀 침해행위”⁵⁶에

53 표준국어대사전,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54 표준국어대사전, “어떤 일에 대한 구상”으로 정의하고, 유의어로 “고안”, “생각”, “착상” 등을 제시함.

5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56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제3호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 “아이디어”는 같은 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며, 이 법의 보호대상인지는 ‘경제적 가치’ 및 ‘아이디어의 비보편성’ 여부로 판단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됨.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행위에 대한 특허청장 등의 조사 및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청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조사나 다른 기관과의 중복조사를 금지(제7조)하고 있음. 이는 조사에 의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기술적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위반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밝히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도 직결되므로 특허청장 등의 조사권 강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청장 등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아닌 ‘권고’하는 데에 그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표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벌칙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 행위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 등의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벌칙 대상에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하는 ‘경쟁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영업비밀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로도 구분될 수 있는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에서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편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업무의 총괄 집행기관인 특허청장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반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이용 행위,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업 활동의 상당한 곤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이를 판단할 것인데, 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사건 처리 기간은 '21년 기준 평균 575일⁵⁷로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됨. 특허청장의 조사권 및 조치권한 강화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과부하 완화 방안 등과도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임

3 기술보호제도의 비교 검토

▣ 기술보호 법률의 보호대상 및 증거수집제도 비교

- (보호대상) 개정 상생협력법과 개정 하도급법이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이자 부당 사용 · 제공 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하였음.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은 “비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나,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의 “기술자료”와 같이 ① 비밀 관리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 ③ 유용성 등의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고, 핵심국가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안보 등에 기여하려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등 법적 필요에 따라 보호대상 및 그 요건은 차이가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에서 그 대상이 “기술자료”, “영업비밀”, “기술적 아이디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거나, 조사나 검토 전에는 구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각 법률의 소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7 공정위 전체 사건 처리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17년 322일에서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 작년 575일로 늘었음. 이하 매일경제TV(2022.10.03.),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평균 575일 걸려...” 참조.

기술 보호 법률의 보호대상

법률명	보호대상
개정 상선헌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u>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u> → 비밀유지계약 대상 및 유용행위로부터 보호대상: <u>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u>
개정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란 <u>비밀로 관리되는</u>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u>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u>
부정경쟁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밀”이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u>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u>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u>를 말한다.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대상 “기술적 아이디어”: <u>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u>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u>를 말한다. → <u>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u>: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 기술</u>
산업기술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u>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하는 기술</u> → <u>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u>⁵⁸

5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제도 비교)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아래의 기술보호 법률은 모두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게 됨. 또한 개정 상생협력법 및 개정 하도급법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보호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이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함. 그러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제도 도입 여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생협력법과는 달리,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자료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고, 기술유용행위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은 자칫 상대방 기업의 방어권 제한 및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는 민사소송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 옴.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할 때에는 그 부작용이나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도 비교

구 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2	제35조	제14조의2	제22조의2	제128조
손해액의 인정	제40조의3	-	제14조의2	-	제128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40조의4	-	-	-	제126조의2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	제35조의2	제14조의3	제22조의3	제132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	제35조의3	제14조의4	제22조의4	제224조의3

■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비교

- (시정명령)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됨. 피해기업의 구제조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각 법률에서 유사한 조치를 중복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기업으로서는 소관 부처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됨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법령명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소관 부처	중기부	공정위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대상	기술자료	기술자료	기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아이디어 ⁵⁹
조사	제27조 제40조	제22조	제80조 등	제8조의2	제7조
공표	제27조	제25조 제25조의4	제49조	제8조의3	제8조
시정명령	제27조 ⁶⁰	제25조	제49조	제8조의3 (시정권고)	제8조 (시정권고)
과징금	-	제25조의3	제50조	-	-
벌칙	제41조제3항 (시정명령 불이행)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시정명령 불이행)	제125조 제4호	-	-

-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의 관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은 모두 기술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후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해당 조문만 보면 기술유용이라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 각 법률의 소관 행정청이 각각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률간 관계 또는 우선순위를 규정함. 상생협력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기업에 시정명령을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함. 참고로 하도급법은 상생협력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 제34조는 상생협력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르도록 하고, 하도급법 제28조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의 부당이용을 금지하는

59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이나 지면상 기술적 아이디어만 기재함.

60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8호와의 관계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 (시정권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한 사용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은 조사 후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권고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2018년 개정을 통해 분쟁 조정·중재 외에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와 이에 대한 권고 및 공표를 도입한 이유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음.⁶¹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를 한 바 있음.⁶² 시정권고의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될 수 있고 공표는 기업 평판이나 이미지 추락이라는 간접적 효과로 기술침해행위의 시정을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 관련 상담만 매년 6000건이 넘는 상황⁶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한 권고 및 공표제도가 그 의도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기술보호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함⁶⁴
- (부처간 업무 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관 부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업무 절차나 관련 조문 간의 우선순위나 관계 등도 확인해야 함. 효과적인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는 관련 조치들의 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부처 간 피해구제 내용이나 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사실 및 위법성을 입증한 후 그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와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벌칙규정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정책고객으로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와의 접근성이 가장 가까울 것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61 중소기업기술보호법(법률 제15692호, 2018.6.12.개정, 2018.12.13.시행) 개정이유 참고.

62 중소벤처기업부(2023.04.1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첫 시정권고 처분”.

63 매일경제(2023.05.16.), “우리 회사 에이스가 떠났어요”.

64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5조제2항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특허청 등과 협의 후 필요한 절차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피해가 접수되는 때부터 피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고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기간 최소화를 위해 부처 간 피해구제절차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술가치 평가 기준) 이에 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침해된 기술의 가치 평가, 기술유용행위 등에 따른 손해 및 손해액의 산정,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편성 판단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발전 및 공유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이나 절차,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의 입법 방향 및 효과

▣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의 입법 방향

- 2017년~2021년 확인된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례만 280건, 피해금액은 2천827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함. 지난 몇 년간 이를 방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다수의 입법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개정 상생협력법 및 개정 하도급법임

▣ 예방적 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개정 상생협력법 및 개정 하도급법에서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은 기술자료 제공받는 때부터 대기업으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認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분쟁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미연에 차단함.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행을 바꾸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그 상한

-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맞추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제공하는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당시 국회에 발의된 상생협력법안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의 5배 범위로 하는 법안⁶⁵도 있었음.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하도급법에서 2011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항소심 판결 1건에 불과함.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음. 현재 다수의 법률에서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5배) 외에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의 3배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정하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간 형평성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증거수집제도 도입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등의 도입은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의 입법 방향에 부합함. 그러나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재판상 방어권 제한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전환 등의 법적 효과를 수반하게 됨. 국회 계류 중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개별법에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수반되는 부작용이나 권리 침해를 비교 형량하는 등 비례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법해야 함. 또한 이러한 제도 도입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거래나 협업을 위축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2 법적 요건·절차 및 체계 정비

□ 기술 분쟁의 장기화

-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수요 조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요청 사항은 피해구제나 조치의 신속성이었음. 분쟁 사례에서도 피해 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고 실제 분쟁 기간이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65 의안번호 2103493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발의) 참조.

▣ 법률별 소관 부처, 중복적 조치, 복잡한 법체계 개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고 각 법률마다 보호대상 및 그 요건부터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공표, 과징금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복잡화와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소관 부처별 대응이 불가피함
- 분쟁 초기에는 침해 기술이 어느 법률의 보호대상인지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고, 상생협력법 제26조와 같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치를 소관 부처가 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계 법률 또는 조문 간 관계나 우선순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조치 등을 위해서는 분쟁 초기부터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이 매우 중요함. 피해 중소기업의 소극성 또는 심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할 때 동의를 받은 후, 필요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등 법적 절차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각 법률의 보호대상 및 조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이들의 요건이나 법률 또는 조문 간 관계나 우선 순위 등을 보다 정치하게 법적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한다면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임

3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 강화

▣ 기술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된 기술적 아이디어

- 최근 아이디어의 가치와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다행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2018년부터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기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제공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기술보호 법률의 조사 규정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와 함께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기술적 아이디어 침해행위를 벌칙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해 보임

4 기술보호 법률 입법 시 고려 사항

□ 입법 절차의 준수

- 앞으로도 기술탈취 방지 및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위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상생협력법의 목적에 부합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외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기술적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하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나 벌칙, 기업 평판이 저하되는 공표 등의 법적 수단 외에도 기술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객관적인 가치 평가 체계 수립, 기술 거래 활성화 및 플랫폼(platform) 형성,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들도 입법되어야 함

□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 및 원칙 준수

-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제·개정 시에도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등의 입법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보호 법률의 입법도 기술의 창출·보호·활용이 나선형으로 순환·발전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REFERENCES

[국내 문헌]

- 고영남 외, 『특허와 지식재산권법』, 2019
-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2016
- 윤선희, 『지식재산권법』, 2022
- 조영선, 『특허법』, 2021
- 김윤정,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조혜신 외,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Ⅲ)-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기타 문헌]

- 동아일보(2023.01.26.), “스타트업 기술보호 역량, 대기업의 57%”
- 매일경제(2023.05.16.), “우리 회사 에이스가 떠났어요”
- 매일경제TV(2022.10.03.),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평균 575일 걸려...”
- 매일일보(2023.05.29.), “중기, 아이디어 탈취 제도개선 적극 이뤄져야”
- 산업일보(2023.06.01.),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여전, 피해만 2천827억원”
- 신소재경제(2020.09.21.),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 100억대 손배 1심 패소”

- 중기이코노미(2023.05.03.),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 탈취는 엄연한 도둑질”
- 중소기업뉴스(2022.01.03.),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와 기술유용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 중소기업뉴스(2023.01.23), “CES 최고혁신상 20개 중 5개는 韓 스타트업이 휩쓸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전국 3400개 기업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2023.04.1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첫 시정권고 처분”
- 한겨레(2022.10.23.), “대기업의 기술탈취...이키기도 어렵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최종 접속일: 2023.06.05.)

이슈페이퍼 23-21-3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875-57-6

93360

비매품

